



RWA Weekly

FDIC, 스테이블코인 감독 체계 구축 착수

▶ Analyst 최윤영 yy.choy@hanwha.com 3772-7402

FDIC가 GENIUS 법 이행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자본·유동성·준비자산·리스크 관리 기준을 포함한 규제안을 제시하며 감독 체계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발행자의 역할은 발행·상환·준비자산 관리 및 제한적 커스터디로 제한되며, 보유 기반 이자 지급 구조도 금지되는 등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정산 수단으로 규정되는 방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토큰화 예금은 기존 예금과 동일하게 보호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별도 자산으로 구분되며 법적 차이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머니는 예금 기반 자산과 비예금 지급 수단으로 구분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 세부 규율 단계 진입

FDIC가 GENIUS 법 이행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적용될 자본·유동성·준비자산·리스크 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규제안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감독 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제안은 OCC의 선행 규제안과 규제 프레임워크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OCC는 지난 2월 발행·상환·준비자산·커스터디 전반에 대한 감독 체계와 함께, 발행자 인가 구조 및 자본·리스크 관리 요건을 포함한 포괄적 규제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양 기관 모두 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규정 확정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중 제도 구체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발행자 규율 강화: 기능 제한 + 리스크 관리

FDIC는 발행자의 역할을 ▲발행 ▲상환 ▲준비자산 관리 ▲제한적 커스터디로 제한하면서, 자본·유동성·리스크 관리 요건을 부과했다. 여기서 커스터디 기능은 스테이블코인 및 준비자산과 그에 대한 접근 권한(예: private key)의 보관에 한정되며, 비결제형 디지털자산을 포함한 일반 디지털자산에 대한 커스터디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규제안은 자본·유동성 요건 외에도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가 요건을 포함하며,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운영 지속 능력을 요구한다. 종합해 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기능적으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영되면서도, 안정성 측면에서는 은행에 준하는 관리 체계를 요구받는 방향으로 규율됨을 알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 제한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도 명시적으로 제한됐다. FDIC는 발행자가 직접 또는 제3자와의 협업을 통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보유만으로 이자나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제공하거나 이를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yield-bearing stablecoin)' 이슈와 맞닿아 있으며, 스테이블코인을 예금 대체 상품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한정하려는 정책 의도를 반영한다. 즉, 은행 예금과의 경쟁을 차단하는 방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리워드 프로그램 등 거래나 서비스 이용에 연동된 인센티브 구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향후 규제 해석 범위에 따라 사업 모델의 차별화 여지는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토큰화 예금 구분

FDIC는 토큰화 예금이 법적으로 '예금'에 해당하며 기존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즉, 예금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록되더라도 법적 성격은 변하지 않으며, FDIC 예금보험을 포함한 기존 은행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디지털 형태의 예금이더라도 은행 시스템 내 자산으로 편입되는 경로를 명확히 한 조치다.

또한 FDIC는 스테이블코인 자체에는 예금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준비금 형태로 은행에 예치된 자금은 보험 대상이지만,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PPSI, 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의 예금으로 간주되어 기업 예금 형태로 보호되는 구조이며, 토큰 보유자에게 직접적인 pass-through 보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법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은행의 '예금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FDIC의 pass-through 보험은 계좌 기록상 수익자 관계가 명확히 식별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스테이블코인은 거래 과정에서 토큰만 이전될 뿐 실제 예금은 이동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또한 GENIUS 법 자체가 스테이블코인을 “연방 예금보험 대상이 아님”으로 명시하고 있어, 토큰 보유자에 대한 직접 보호는 배제된다.

스테이블코인은 예금 대체 수단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규정

이번 규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예금 대체 수단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또한 FDIC가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 및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제도권 내 발행을 허용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비은행 발행자의 경우는 GENIUS 법에 준한 별도 라이선스 체계를 통해 규율되는 구조가 병행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에 따른 이자 지급 제한과 활동 범위 규정은 은행 예금과의 경쟁을 차단하는 동시에, 토큰화 예금과의 법적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여 디지털 머니를 ‘예금 기반 자산’과 ‘비예금 지급 수단’으로 구분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4월 8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윤영)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른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6년 3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90.7%	9.3%	0.0%	100.0%